

상하이 지역의 무고정기한노동계약(정규직) 전환 실무 변화

중국 <노동계약법> 상 '고정기한노동계약'의 '무(無)고정기한노동계약'전환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하이 지역은 그동안 기타 지역과 다른 해석 및 실무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러한 해석 및 실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정기한노동계약의 무(無)고정기한노동계약 전환 조건

중국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고정기한노동계약', '무(無)고정기한노동계약', '일정 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제12조). 고정기한노동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의 종료 시점을 약정한 노동계약이고,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대하여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i)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된 경우
- (ii) 사용자가 최초 노동계약제도를 실행 시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법정 퇴직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iii)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는 경우

위 (i) ~ (iii)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면 노동계약을 위법하게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계약법> 상 보장된 경제보상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8조, 제87조).

2. 상하이 지역의 해석 및 실무 변화

위 조건 중 '(iii)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하이 지역의 사법기관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노동계약법 적용에 관한 의견(上海市高级人民法院关于适用<劳动合同法

Related Areas

중국

Contact

강희철 변호사

02-528-5203

hckang@yulchon.com

이명재 외국변호사

02-528-5035

mjlee@yulchon.com

정상훈 변호사

02-528-5739

shjeong@yulchon.com

김은숙 외국변호사

02-528-5618

ysjin@yulchon.com

윤준식 변호사

02-528-6415

junshikyoona@yulchon.com

김정민 변호사

02-528-5696

jungminkim@yulchon.com

주영애 외국변호사

02-528-5072

yazhu@yulchon.com

>若干问题的意见)>(沪高法[2009]73号) 제4조에 따라, 연속하여 2회의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용자는 노동자와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반면, 베이징 등 다수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노동분쟁 법률적용문제 연구·토론 의견제요(劳动争议法律适用疑难问题研讨观点摘编)>(2025년 1월 1일 시행)라는 문건에서 기존의 상하이시 해석, 실무례를 소수의견으로 설명하며,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자가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상하이시 각 사법기관은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하이시 고등법원의 의견 변화로 인하여 향후 실무에서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권 내지는 갱신기대권 행사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자와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하이 지역의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고정기한노동계약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사법실무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